

# 과 업 지 시 서

- 약학관, 종합강의동 계량기 분리공사 -

2021. 12.

동국대학교 BMC종합행정실



#### 1. 공사 개요

- 가. 공사명 : 약학관 종합강의동 계량기 분리공사
- 나. 공사위치 :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전기실
- 다. 공사내용
  - 1) 약학관 전기실 지정 큐비클(종합강의동 라인)마다 CT 설치
  - 2) 지정 큐비클 외함 전면부에 전자식계량기 설치
- 라. 공사기간 : 착공일 기준 14일 이내
  - ※ 착공일은 발주처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

# 2. 견적 작성 기준

- 가. 공사비 산출은 우리 대학의 현장여건에 따르며, 공사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변경은 없다.
- 나. 공사범위 및 견적 작성 기준은 현장설명서(질의응답문서 포함), 설계도서(도면, 시방서)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포함하여,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설계도서에 우선한다.
- 다. <u>도면,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</u> 적인 항목은 견적에 반영한다.
- 라. 설계도서(도면과 시방서)간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, 반드시 서면질의응답을 통하여 우리대학으로부터 명확한 공사방법 및 한계를 제시받아 견적에 반영하여 한다.
  - 만약 질의회신 내용에 언급이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사는 견적 시 상급사양 (또는 상급공법)으로 견적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시공 중에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상급사양(또는 상급공법)으로 시공하며,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요청할수 없다.
- 마. 입찰 전 공사비 산정은 반드시 제공된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를 근거로 현장확인 및 실 측을 통해 산정하도록 하며,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사여건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별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.
- 바.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하다.
- 사. 공사기간 중 사용된 가설전력 및 공사용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. (필요 시 별도 공사용 수전을 설치하며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함)
- 아. 사용 전 검사 등의 공과금은 시공자부담으로 포함한다.
- 자. 아래 공사특수조건 및 동국대학교 공사일반조건에 명기된 사항들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비와 간접비는 모두 견적에 반영한다.
- 차. 관계법령에 따른 간접경비는 반드시 최소기준 이상 반영한다.
- <u> 카. 견적 기간 중 질의응답에 관련된 사항은 메일 전송하며, 이에 대한 답변사항은 현장설</u> 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타. 질의내용 이외에 우리대학이 판단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내용에



### 포함되며, 이는 반드시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# 3. 공사특수조건

- 가. 건축 및 설비와 연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 승인 득한 후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나.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민원 또는 공사진행 및 준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대관협의 및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.
- 다. 현장의 각종 안전시설 및 가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관련 법규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로 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.
- 라. 현장 대리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원활한 현장 운영을 위하여 인원배치 계획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또한 발주처에 요구가 있을 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.
- 마.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 시 조직도와 관련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국민연금 납부확인서)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 착공 후 인원배치 계획을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대학은 착공계 승인을 불허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.
- 바.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기되어 있지 않는 자재는 KS제품이나 동등 이상 제품과 가장 최근에 출신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모든 자재는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두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.
- 사. 본 공사 시행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,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,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발주처에 문의해야 하며, 견적오류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.
- 아. 물량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, 공사범위 외의 감독관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만 추가공사비를 인정한다.
- 자.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재료 중 발주자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.
- 차. 소음 진동 및 먼지가 발생하는 직업 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기존시설물 및 민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- 카. 본교는 계약사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며, 원도급자는 본교의 기성금과 관계없이 하 도급 기성 및 자재비, 인건비, 각종 경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- 타.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업체에 한정하며, 감독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.



#### 4. 공사일반조건

- 가. 시공자는 계약과 동시에 발주처로 착공계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공계획서에는 공정표, 인력배치계획, 가설계획, 재해예방대책, 자재수급계획표 등에 관한 내용이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- 나. 시공사는 계약 이후 발주처로 공사일보(매일 오전 9시)와 주 1회 공정회의록을 제출한 다
- 다. 시공 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변시설(전기, 급수, 도시가스) 등의 정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(3일 전)에 미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확인받도록 하며,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- 라.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/형사상의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.
- 마. 시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에 필요한 각종 측량 및 먹줄 놓기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득하다.
- 바. 시공사는 공사 중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우리대학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사. 설계 변경 시 단가 적용은 계약단가에 의하며 계약내역에 없는 단가는 공인된 물가정보 지의 가격에 설계예정가격 대비 총 계약금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- 아. 시공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되어야 하며,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일괄 재 도급은 불허하고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자. 시공사는 공사 진도별 진척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촬영(일 2회 이상)을 하여야 하며, 준공계 제출 시 착공전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사진자료를 우리대학으로 제출한다.



### 5. 하자처리기준

# 가. 시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증권(서울보증보험)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.

- 나. 하자 발생 시 시공사는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 도 다음의 기준일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  - 1) 하자접수 : 유선통보 후 2일(48시간) 이내 현장 확인.
  - 2) 처리계획 : 현장 확인 후 1일(24시간) 이내 처리계획 송부
  - 3) 하자처리 : 유선통보 후 5일 이내 하자보수 착수 유선통보 후 7일 이내 하자보수 완료
- 다. 유선 연락 후 7일 이내 하자의 처리가 되지 않을 시 다음 기준으로 처리한다.
  - 1) 하자 접수 후 착수했을 경우 : 시공사에서 지연사유 및 일정에 대한 공문 제출
  - 2) 유선 통보 후 7일 이내 하자보수 착수하지 않을 경우 :
    - 가) 내용증명 1차 발송 (처리기한 : 내용증명 접수 후 7일) → 시공사
    - 나) 내용증명 2차 발송 (처리기한 : 내용증명 접수 후 5일) → 시공사 및 증권발급 기관
    - 다) 하자보수 선 처리 후 비용 청구(최초 유선연락으로부터 30일) → 증권발급기관
- 라.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유선연락통보 후 7일 이내에 우리대학으로 문서 접수하여야 하며, 만약 이의 제기 없이 보수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, 하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.



# - 특기시방서 -

1. 약학관 전기실 지정 큐비클 내 해당 라인 내부에 CT를 설치한다.

### 가. 상세내용

NO.	큐비클	PANEL	MCCB (AP-AF/AT)	КА	적용 위치
1	LV-A1-4	B-PE-EV	100/100	65	강의동 승강기
2	LV-A1-3	B-LE-1	100/80	65	강의동 비상라인
3	LV-A1-3	A-LE-B1	100/80	65	강의동 비상라인
4	LV-A1-1	B-LN-1	400/250	65	소화동력
5	LV-A1-1	B-LN-5	250/160	65	강의동 전등, 전열
6	LV-A1-1	B-LN-3	250/200	65	강의동 전등, 전열
7	LV-A1-1	B-LN-5A	250/125	65	강의동 5층
8	LV-A2-2	B-PN-AC2	400/400	85	냉난방기

- 나. 상기 지정 큐비클 내 해당라인에 CT 설치
  - 1) CT 설치 시 큐비클 내부 뒷면에 설치
  - 2) 큐비클 외함 앞면 중앙 지정 위치에 타공하여 전자식 계량기(LS 제품) 설치
  - 3) 전자식계량기 사진



다. 해당공사는 약학관 전기실에서 종합강의동으로 분기되는 모든 라인에 대해 계량하기위한 공사이기에 종합강의동으로 분기되는 모든 라인에 계량기 설치 필수



### 라. 큐비클 내 분기라인 사진



- 2. 모든 제품은 KS인증 제품을 사용한다.
- 3.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(안전관리비 증빙으로 활용 가능)

**과업**지시서 BMC종합행정실



4. 준공청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가. 공사완료 후 내·외부 공간에 대한 준공청소를 실시하고, 발주자의 검사를 득하여야한다. 준공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추가적인 청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일정을 수립하고 청소 실 시한다.

나.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당일 교외로 반출하고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.